

### 【질문 3 : 기부금에 대하여】

#### <회답>

#### 1.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세제상 혜택에 대하여

##### (1) 국세(소득세)의 기부금공제

개인납세자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등에게 세법에 규정한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text{기부금특별공제액} = \text{기부금액} - 2,000 \text{ 엔} (\text{기부금은 소득의 } 40\% \text{ 한도})$$

정당이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일정한 기부금은 소득세액에서 공제도 가능

$$\text{기부금공제액} = (\text{기부금액} - 2,000 \text{ 엔}) \times 30 \sim 40\%$$

(기부금은 소득의 40%한도, 특별공제액은 소득세액의 25%한도)

##### (2) 지방세(주민세)의 기부금 세액공제

국가가 부과하는 소득세외에, 지방공공단체로부터 부과되는 주민세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일정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text{세액공제액} = (\text{기부금액} - 2,000 \text{ 엔}) \times 10\%$$

또한, 토도부현·시구읍면에 대한 기부금(고향납세)에 대하여는, 특례로서 통상의 기부금 공제보다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소득세와 합하여 자기부담액에서 2,000 엔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공제 한다.

고향납세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임의의 지방공공단체에 기부가 가능하며, 지방공공단체로부터는 답례로서 지방의 특산품 등을 보내주는 관례가 있으나, 지방공공단체로부터 기부금의 획득경쟁이 과열되어, 고액품의 답례가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도시부에서 지방으로 세수이전이 가속됨과 동시에 고액소득자가 기부에 따른 메리트가 높아지므로 지방공공단체·납세자간 불공평한 감이 높아지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 2. 고향납세 원스톱 특례제도에 대하여

「고향납세」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자치단체 등, 자기가 선택한 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 기부금액 중 2,000 엔을 넘는 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상한선 한도 내 금액을,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전액 공제하는 제도이다.

2008 년도 세제개정 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기부금공제 외에 각 자치단체로부터 특산품이 보내지는 등의 메리트도 있으며 시행초기에는 연간 3.3 만 명이 적용, 72 억 엔의 기부금이 모였으나 2015 년도에는 연간 130 만 명이 적용, 1,470

억 엔의 기부금을 전국 각지의 자치단체에 기부하였고, 998 억 엔을 공제 받았다.

이렇게 「고향납세」의 적용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2015년도 세제개정 시 제도가 확충되어, 상한액이 약 2 배 증가되었고 확정신고가 필요 없이 공제되는 「고향납세 원스톱 특례제도」가 신설되었다.

급여소득자 등 원래 확정신고가 필요 없는 납세자가 「고향납세」를 하는 경우, 납세처의 자치단체수가 5 단체 이내로서 각 납세처의 자치단체의 특례적용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고향납세」제도 시행 이후, 동일본 대지진때 피해를 당한 자치단체를 지원함으로써 크게 늘어난 2011 년을 정점으로 제자리걸음하고 있던 기부액은, 2015 년에는 전년의 4 배로 증가하였고, 적용자의 약 1/3 인 42 만 명이 납세 원스톱 특례제도를 이용하였으며, 247 억 엔의 기부로, 229 억 엔을 공제 받았다